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4.

제안자 : 정치개혁특별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개정안은 당원협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사무소를 둘 수 있는 당원협회의 기준을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회에 한정하도록 하고, 시·도당이 해당 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이와 같은 사무소 설치 제한 및 경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,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사무소를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, 중앙당의 정기보고 신고시한을 2월 15일까지로 하고, 허위등록신청죄의 구성요건을 “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당원협회에 사무소를 둔 자”로 규정한 제59조제1항제3호도 “제37조제3항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”로 수정하려는 것임.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5조제3항 중 “1월 31일까지”를 “2월 15일까지”로 변경한다.

안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-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로 당원 협의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.

안 제5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5조(정기보고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5조(정기보고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 른 당원협의회 현 황(당원협의회가 사 무소를 둔 경우에 는 그 사무소 현황 을 포함한다)을 다 음 연도 1월 31일 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.	제35조(정기보고) ① .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2월 15일 까지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	④ (개정안과 같음)
④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연간 활동실 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	⑤ ----- -----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⑤ (개정안과 같음)

제37조(활동의 자유)

① . ② (생략)

③ 정당은 국회의 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누구든지 시·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.

<신설>

제37조(활동의 자유)

① .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정당은 국회의 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고, 당원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사무소를 둘 수 있는 당원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정한다.

④ 시·도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의

제37조(활동의 자유)

① . 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정당은 국회의 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 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.

<삭제>

	<u>운영을 위한 경비</u> <u>를 지원할 수 있다.</u>	
제59조(허위등록신청 죄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 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	제59조(허위등록신청 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59조(허위등록신청 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 음)	1. 2. (개정안과 같 음)
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 단서 의 규정을 위반하 여 시·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 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	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을 위 반하여 당원협의 회에 사무소를 둔 자	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 후 단 을 위반하여 국 회의원지역구마 다 사무소를 2개 소 이상 설치한 자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0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9.

찬성자 : 조은희 · 이만희 · 권영진
윤재옥 · 서천호 · 이종욱
박준태 · 최은석 · 강선영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, 자치구·시·군 및 읍·면·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,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,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,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.

이에, 당원협의회(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)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

도록 하고,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(사무소 현황 포함)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, 시·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3항 신설, 제37조제3항 등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가. 중앙당의 당원협의회 현황 보고 기한을 2월 15일까지로 수정함(안 제35조제3항).

나. 사무소를 둘 수 있는 당원협의회의 기준 및 경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,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제3항).

다. 허위등록신청죄의 구성요건 중 “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둔 자”를 “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”로 수정함(안 제59조제1항제3호).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- 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(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)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.

제5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정기보고) ① ·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5조(정기보고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(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)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
<u>③ (생략)</u> <u>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</u>	<u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 <u>⑤ -----제4항-----</u> ----- ----- -----.
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 · ② (생략) <u>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누구든지 시·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.</u>	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.</u>

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2. (생략) 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·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(생략)	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후 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② (현행과 같음)
--	--